희망찬 미래를 여는 창원특례시의회

제120회 창원시의회(정례회)
제5차 ~ 7차
경제복지여성위원회(2022.12.5.~12.7.)

##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

# 예 비 심 사 보 고 서




# 창 원 시 의 회

## (경제복지여성위원회)

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

# 검 토 보 고 서

2022.12.5.~12.7.
경제복지여성위원회

## 1. 소관부문

❍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

## 2. 심사경과

❍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11. 17.  창원시장

❍ 회부일자 : 2022. 11. 17.

❍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20회 창원시의회(2차 정례회)
제5~7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(2022.12.5.~7.) 상정, 질의・답변, 토론, 의결

## 3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소관 국장)

[제안사유]

❍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

[기금조성 규모]

가. 시 전체

(단위 : 원)

| 기 금 수 | 2022년도말 조 성 액 | 2023년도 운용계획 | | 2023년도말 조 성 액 | 증 감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수 입 | 지 출 | | |
| 15개 기금 | 435,553,246,000 | 71,777,519,000 | 78,036,445,000 | 429,294,320,000 | △6,258,926,000 |

## 나.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

❍ 총 괄

(단위 : 원)

| 기 금 수 | 2022년도말 조 성 액 (a) | 2023년도 운용계획 | | 2023년도말 조 성 액 (e=a+d) | 증 감 (d=b-c)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수 입 (b) | 지 출 (c) | | |
| 6개 기금 | 62,124,165,000 | 1,684,686,000 | 11,488,280,000 | 52,320,571,000 | △9,803,594,000 |

❍ 기금별 내역

(단위 : 원)

| 구 분 | | 2022년도말 조 성 액 (a) | 2023년도 운용계획 | | 2023년도말 조 성 액 (e=a+d) | 증 감 (d=b-c)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수 입 (b) | 지 출 (c) | | |
| 총 계 | | 62,124,165,000 | 1,684,686,000 | 11,488,280,000 | 52,320,571,000 | △9,803,594,000 |
| 경제 일자리국 | 중소기업육성기금 | 39,326,493,000 | 307,500,000 | 8,007,090,000 | 31,626,903,000 | △7,699,590,000 |
| | 투자유치진흥기금 | 8,691,489,000 | 385,406,000 | 2,000,376,000 | 7,076,519,000 | △1,614,970,000 |
| 복지여성 보건국 | 자 활 기 금 | 2,137,660,000 | 142,250,000 | 260,000,000 | 2,019,910,000 | △117,750,000 |
| | 양 성 평 등 기 금 | 6,849,610,000 | 97,185,000 | 400,000,000 | 6,546,795,000 | △302,815,000 |
| | 노 인 복 지 기 금 | 4,246,349,000 | 82,794,000 | 82,698,000 | 4,246,445,000 | 96,000 |
| | 식 품 진 흥 기 금 | 872,564,000 | 669,551,000 | 738,116,000 | 803,999,000 | △68,565,000 |

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## <총 괄>

❍ 본 안건은 『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, 기금은 『지방자치법』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을 위하여 운용하는 자금임

❍ 2023년도 창원시 기금 조성 총규모는 4,292억 9,432만원이며, 수입은 717억 7,751만원, 지출은 780억 3,644만원으로 2022년보다 62억 5,892만원이 감액되었음.

**<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>**

❍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, 투자유치진흥기금, 자활기금, 양성평등기금, 노인복지기금, 식품진흥기금 등 총 6건으로

## 가. 중소기업육성기금

(단위 : 원)

| 기 금 명 | 2022년도말 조 성 액 | 2023년도 운용계획 | | 2023년도말 조 성 액 | 증 감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수 입 | 지 출 | | |
| 중소기업육성기금 | 39,326,493,000 | 307,500,000 | 8,007,090,000 | 31,626,903,000 | △7,699,590,000 |

❍ **중소기업 육성기금**은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「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지원하는 기금으로 창원시에 주사무소(본사)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, 제조관련 서비스업, 4차산업관련 연구개발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

▸ **수입은**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수입 3억 750만원이며,

▸ **지출은** 총 80억 709만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709만원,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민간이전 80억원이며,

▸ **2023년도말 조성액**은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76억 9,959만원 감소한 316억 2,690만원임.

## 나. 투자유치진흥기금

(단위 : 원)

| 기 금 명 | 2022년도말 조 성 액 | 2023년도 운용계획 | | 2023년도말 조 성 액 | 증 감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수 입 | 지 출 | | |
| 투자유치진흥기금 | 8,691,489,000 | 385,406,000 | 2,000,376,000 | 7,076,519,000 | △1,614,970,000 |

❍ **투자유치진흥기금**은 「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기에 제공하여 관내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공장부지 매입비 30% 이내에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하고 있으며,

▸ **수입**은 총 3억 8,540만원으로, 이자 수입 1억 2,231만원,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금 회수 2억 5,000만원, 남문 외투지역 임대료 1,309만원이며,

▸ **지출**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20억원, 융자금 취급 수수료 376,000원으로,

▸ **2023년도말 조성액**은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16억 1,497만원 감소한 70억 7,651만원임.

## 다. 자활기금

(단위 : 원)

| 기 금 명 | 2022년도말 조 성 액 | 2023년도 운용계획 | | 2023년도말 조 성 액 | 증 감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수 입 | 지 출 | | |
| 자 활 기 금 | 2,137,660,000 | 142,250,000 | 260,000,000 | 2,019,910,000 | △117,750,000 |

❍ **자활기금은**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18조의7, 「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자활기금의 적재적소 활용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지원에 활용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으로 지역자활센터, 자활기업

전세점포임대 지원, 자활기업 사업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

- ▸ **수입은** 총 1억 4,225만원으로 정기예금 이자수입 3,000만원,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1,000만원, 자활사업단 정리 등 매출액 반납 3,000만원, 민간융자금 회수 7,000만원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25만원,
- ▸ **지출은** 총 2억 6,000만원으로 자활가족한마당 대회 등 5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6,000만원,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 융자금 1억원으로,
- ▸ **2023년도말 조성액**은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1억 1,775만원 감소한 20억 1,991만원임.

## 라. 양성평등기금

(단위 : 원)

| 기 금 명 | 2022년도말 조 성 액 | 2023년도 운용계획 | | 2023년도말 조 성 액 | 증 감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수 입 | 지 출 | | |
| 양 성 평 등 기 금 | 6,849,610,000 | 97,185,000 | 400,000,000 | 6,546,795,000 | △302,815,000 |

❍ **양성평등기금**은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42조,「창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」에 의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활동 지원을 위한 조사, 연구, 양성평등교육 및 여성단체 교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

- ▸ **수입**은 총 9,718만원으로 이자수입 379만원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9,339만원이며,
- ▸ **지출은** 총 4억원으로, 양성평등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사업 2억 5,000만원, 여성지역 안전증진 시설부대비 1억 5,000만원이며,
- ▸ **2023년도말 조성액**은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3억 281만원 감소한 65억 4,679만원임.

## 마. 노인복지기금

(단위 : 원)

| 기 금 명 | 2022년도말 조 성 액 | 2023년도 운용계획 | | 2023년도말 조 성 액 | 증 감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수 입 | 지 출 | | |
| 노 인 복 지 기 금 | 4,246,349,000 | 82,794,000 | 82,698,000 | 4,246,445,000 | 96,000 |

❍ **노인복지기금은** 「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의하여 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경로당 및 노인여가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

▸ **수입은** 총 8,279만원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2,251만원,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6,028만원이며,

▸ **지출은** 노인복지사업 8,269만원이며,

▸ **2023년도말 조성액**은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96,000원 증가한 42억 4,644만원임.

## 바. 식품진흥기금

(단위 : 원)

| 기 금 명 | 2022년도말 조 성 액 | 2023년도 운용계획 | | 2023년도말 조 성 액 | 증 감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| | 수 입 | 지 출 | | |
| 식 품 진 흥 기 금 | 872,564,000 | 669,551,000 | 738,116,000 | 803,999,000 | △68,565,000 |

❍ **식품진흥기금은** 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, 「창원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」에 의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한 기금으로 음식문화 개선, 좋은 식단 실천, 위생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허가(신고)를 득한 식품위생업소 중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 업소를 지원하며,

▸ **수입**은 총 6억 6,955만원으로 식품위생업소 과징금 수입 2억 4,000만원, 음식문화개선사업,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,

주방위생환경 개선사업 지원 등 보조금 4억 2,311만원,
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등 이자 수입 643만원이며,

▸ **지출**은 총 7억 3,811만원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, 수저위생포장지 지원 등 사무관리비 1억 4,401만원, 창원시 맛스터 요리학교 위탁운영비 1억 2,000만원, 식중독사각지대 찾아가는 위생교육참여업소 인센티브 제공, 식중독사각지대 찾아가는 위생교육 등 기타보상금 1억 9,410만원 식품접객업소 주방위생환경 개선사업 지원 1억 2,000만원, 제9회 음식문화축제 1억 5,000만원, 아구데이축제 지원 1,000만원 등이며,

▸ **2023년도말 조성액**은 2022년도말 조성액 대비 6,856만원 감소한 8억 399만원임.

❍ 금회 제출된 2023년도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6개 기금 운영과 관련한 「2023년도 창원시 기금운영계획안」은 법정의무기금인 자활기금, 식품진흥기금과 법정재량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, 양성평등기금, 자체기금인 투자유치진흥기금, 노인복지기금으로 구분되어 설치목적 및 지원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 운영의 공공성, 지방재정의 효율성 및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5. 질의·답변요지 : 기재생략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
8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